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4월 30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4월 30일

3. 제안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시군의회의원의 정수를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과 청주시 동의 통합, 인구수('98. 3. 31기준)의 증감에 따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선거구 : 163 ⇒ 146(△17)

○ 의원정수 : 180 ⇒ 146(△34)

※ 증감사유

· 읍면동 통합(△4)

- 증(4) ⇒ 청주시(4) : 수곡1, 수곡2, 중앙, 성안동

- 감(8) ⇒ 청주시(8) : 수곡, 영·북2·북3가, 문화·북1·남2가, 서운·남1가,

서문, 남주, 석교, 수동

- 인구 5,000이하동(13)
 - 청주시(1) : 강서제2동,
 - 충주시(5) : 성내·성남·성서, 충인·충의, 단월·풍·가주, 용관·용두·달천, 종민·안림·목벌동
 - 제천시(7) : 의림, 중앙, 남천, 두학, 화산2, 영천1, 영천2동
- 2인선거구 ⇒ 1인선거구(17)
 - 청주시(10) : 우암, 울량·사천, 사창, 모충, 금천, 은천·신봉, 용암·용정·방서, 수곡, 북대제2, 봉명제2·송정동
 - 충주시(2) : 교현1, 연수동
 - 제천시(1) : 청전동
 - 옥천군(1) : 옥천읍
 - 영동군(1) : 영동읍
 - 진천군(1) : 진천읍
 - 괴산군(1) : 증평읍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천미만의 동은 인접하는 읍면동과 통합하고 선거구도 읍면동

단위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되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가 동의 통합 및 인구 변동 등으로 현행 163선거구에서 17선거구가 줄어든 146선거구로, 의원정수는 180명에서 34명이 감소된 1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즉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